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박덕흠 · 윤한홍 · 강대식
최수진 · 임종득 · 서천호
김예지 · 구자근 · 김대식
김정재 · 추경호 · 서지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“지체 없이” 통지·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.

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,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“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,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”로 정의하고,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·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·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·제3항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”를 “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되었을 때에는”을 “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”로, “지체 없이 보호위원회”를 “보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기, 방법”을 “방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· 신고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 (이하 이 조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<u>에는 지체 없이</u> 해당 정보주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.	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· 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된 때 또</u> <u>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</u> <u>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</u> <u>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</u> <u>에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 <u>을 때에는</u> 개인정보의 유형, 유 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	③ ----- ----- <u>된</u> <u>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</u> <u>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</u> <u>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</u> <u>이내에</u> -----

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,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보호위원회

④

방법